

## 10 코로나19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

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(가족돌봄, 본인건강, 은퇴준비, 학업 등)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- 지원대상 :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,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
- 지원요건 : ①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, ②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15~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, ③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, ④전자·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(월 5회 이상 누락시 지원 제외), ⑤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
- 지원내용 : 임금감소보전금, 간접노무비, 대체인력지원금 지원

| 지원내용     | 지원수준   | 지원대상    |
|----------|--|---------|
| 임금감소보전금  | 주15~25시간으로 단축 : 월 최대 60만원<br>주25~35시간으로 단축 : 월 최대 40만원 | 모든 기업   |
| 간접노무비    | 근로자 1인당 40만원   | 중소·중견기업 |
| 대체인력 지원금 | 우선지원대상기업 : 월 최대 80만원<br>그 외 기업 : 월 최대 30만원             | 모든 기업   |

\*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 공지사항 및 일생활균형 홈페이지([www.worklife.kr](http://www.worklife.kr)) 공지사항의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신청절차
  -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 후 매월 단위 신청
  -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\* 첨부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 또는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신청
- \*임금대장, 임금지급증빙서류, 취업규칙, 사업주확인서, 근태관리자료 등
-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(공휴일 제외)
- 기타문의 :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없이)☎1350  
파주고용센터(☎031-860-0401)

Q&A